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

세부사업명	과수 생산위	우통지원					세목			체자본 조
내역사업명	과수분야 4	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예산 (백만원)							200	
사업목적		마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여 노동력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								
사업 주요내용		바수분야 ICT 시설(온·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 방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	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ICT융복합	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								
지원한도	사업별 지원	원 단가는	는 실 단가를	를 적용, 사업	겁비 성	상한액	기준: 20)0백만	·원	
재원구성(%)	국고	20	지방비	30	융지	+	30	자부	남	20
	 구 분	20)18년	2019년		2(D20년	_	<u> </u> 위 : 박 21년 (
	<u> </u>	20	3,640	2,00		۷.	1,000	20	7,50	
연도별 제저트이	- <u>발 개</u> 국 고		800	40			200		1,50	
재정투입 계획	<u>'</u> 지방비		1,200	60			300		2,25	
	 용 자		840	42			210		1,26	
	자부담		800	58	0		290		2,49	90
담당	당기관		담당	과		담당	자		연락치	4
농림축	산식품부		과 장 근 원예경영과 사무관 초 주무관 서				종순 044-201-2255		2255	
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 정보원		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044-861-8763					8763			
신청시기	정기(전년	도 11.30).일까지)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
 - 사과, 배,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(시설·노지)
 * 10.000㎡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1.000㎡ 이상)
- 지원제외 대상자
 - 열대·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
 - 과수(품목과 무관)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가)
 -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, 수출 농가, 친환경·GAP·재해보험·계약재배 농가,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(또는 참여약정)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
 - ※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·지원

3. 지워대상

-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포함)
 -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 - 관수, 시비,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
 - 과수원의 센싱·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 - *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, 중복지원 불가 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
 - ※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·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

-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
 - 관정, 관수관비시설, 무인방제시설, 서리피해방지, 양액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·장비
 - *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
 - 단,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,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
 - *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·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·장비에 한정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
 - *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,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.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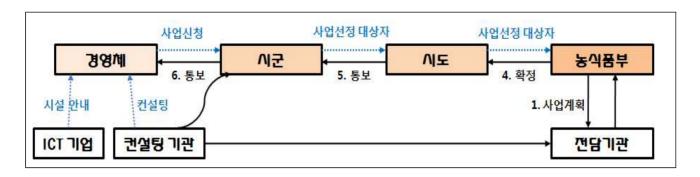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(지원조건)

- 국고 재원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20%, 국고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- 융자금리 : 고정 2.0%, 변동(시중금리*-2.0%)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 -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- *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
- 사업주관기관 :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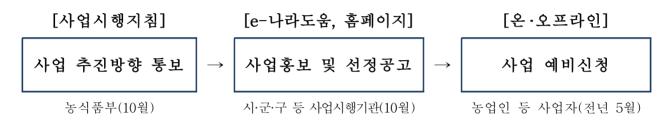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표준사업비 : 노지(20백만원/ha), 시설(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/0.33ha, 단순 환경관리 7백만원/0.33ha)
 - *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
 - *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(100%)로 계획 수립 후, 대상농가에 지원
- 사업비 상한액 기준 : 200백만원
- ※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,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·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

Ⅱ / 사업추진체계


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.
 -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 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
-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, 농식품사업의 교육·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해야 한다.
 - 다만, 정보취약계층*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, 집행계획·정보입력·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, 피대리인 정보입력, 위임장, 금융정보제 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 - * **정보취약계층**: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·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어촌지역 주민, 장애인, 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-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·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[첨부 2]를 제출(전 년도 11월)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.

-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,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
-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.

농릮축산식품부

-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(전년도 6월)
- ①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·도별 내시안 안내(전년도 10월)

지자체(시·도↔시·군)

-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(이하 전담기관)에 제출(전년도 5월)
 - 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 -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(친환경과원관리),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(전년도 5월)
-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(안내)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(전년도 6월)
- 8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,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9월)

경 영 체

-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(전년도 5월)
-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,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으로 제출(전년도 8월)
 - *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
 -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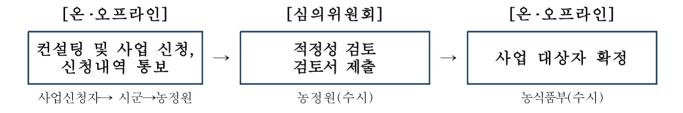
전담기관(농정원)

-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, 규격 및 서비스 기준,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(전년도 6월)
-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(전년도 9월)

컨설팅 기관

-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·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(전년도 6~8월)
 - *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농업 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,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-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·도에 시달(전년도 12월)
- ② 시·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)
 - *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

시・도

- ③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,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 12월)
- ⑥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(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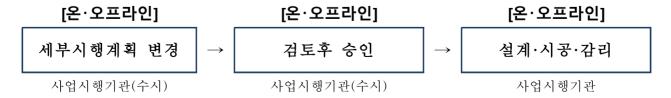
시・군

-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·도에 보고하고, 전담 기관에 제출(1월)
 - 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 -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·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
 - * '사업대상자 선정기준'의 평가항목에 지역별·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(구분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·변경 가능
 - *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선정 순위>

- ①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·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,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위
- ©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(시설조건, 활용조건)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
- ©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, 지역별,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 으로 보완하여 사용
- ②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
- 마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田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
- △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.
-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(2월)
 - 지원계획,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

3.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



설계·시공·감리

- 시장·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
-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·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,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
 - *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II-3. 지원대상(지원사업의 종류)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,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(국비+지방비+융자+자부담)

지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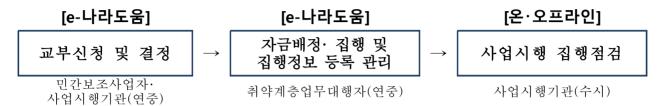
- 농업경영체(또는 조직)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·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, 시장·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승인여부 결정
-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,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에는 사업주관기관(시·군 또는 시·도)에서 변경하여 집행
-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반드시 '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' 품질보증 제품 사용

사업변경철차
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지역, 지원품목,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·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(시·도는 농식품부로 제출)
 - 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- 시·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, 시·도는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
- 시·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,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,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
- 사업시행주체(지원대상조직)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(시·군)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

○ 사업계획 변경시,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,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,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참여 제한

4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
 - 다만,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,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,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- 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
 - 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- 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 등록
-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<u>하고자 할</u>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</u>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
○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 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45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 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
<자금배정>

<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>

◇ 기성고(준공) 확인 신청(사업자→시장·군수) ⇒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
 (지자체→농식품부) ⇒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(사업자→대출기관) ⇒ 보조금
 신청 및 지급(지자체→농식품부) ⇒ 결산·정산보고(지자체→농식품부)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식품부는 시·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
지 자 체
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"사업자금 집행의 원칙"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,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」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○「기본규정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(100%)이 원칙이나, 시장·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하여 자부담 비율이 20% 이상이고,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%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.
-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, 환급금은 지원비율(국고, 지방비, 자부담 등)에 따라 환수 조치
 - 단,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,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·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·결정하여 추진
- 기계·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

5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 [e-나라도움]
 [e-나라도움]
 [e-나라도움]

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 →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
 → 중요재산 관리

 민간보조사업자(연중)
 사업시행기관(연중)
 민간보조사업자(사후관리기간내)

-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-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-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
 - *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(비예치형)는 집행잔액,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
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·보완 요청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- 중요재산의 현황은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 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 - *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,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-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.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,
 - 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- 아울러「기본규정」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
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화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

○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《이행점검단계》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,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
- 점검일정 : 연 2회(반기별 1회)
- 점검반 : 농식품부, 전담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
- 점검내용
- ·사업계획 및 진척도,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,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
- *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

지자체
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
-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
-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(영수증 등)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,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
 -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

컨설팅 기관

○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,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·군에 제출

전담기관

-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, 시설설치 컨설팅,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확인
-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

《사후관리》

-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(사업의 관리책임 등)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-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'부기등기'를 실시 하여야 함(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) *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	리기간	처분제한기준
세 건 병	부터	까지	시 문제 안기 판
- 부동산(토지, 건물, 비	준공일	10년간	
닐하우스골조 등)		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- 부동산의 종물(건물	준공일	7년간	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
내 기계설비)			담보제공
- 주요기계·장비·자재	구입일	5년간	

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, 금융기관(농업보조금 취급기관)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

《제재 및 처벌내용》

사업관리주체(시·도 및 시·군)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, 무단 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, 「기본규정」<u>제78조제6항, 제79조제7</u> <u>항</u>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 식품부 보고
- *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

Ⅲ 평가 및 환류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주관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
○ 평가시기 : 차년도 12월말 기준(구축 전후비교)

○ 평가방법

- 전담기관 및 시장·군수(시도지사)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

- 평가내용 : 사업목표 달성여부, 사업성과 등

○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

시·도(지자체)

○ 주관기관 : 시장·군수(시도지사)

○ 평가시기 : 구축후 1년 이내

-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*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

전담기관

-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
-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(주관기관 적극 협조)
 -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

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시·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'20.2월)
-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·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

2.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○ 신청서 제출기관 : 시장·군수

○ 제출기한 : '20.5월(예비사업자)

○ 신청자격: '20년도 신청자격 확인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)

3. 기타 사항

○ 사업시행지침, 규격 및 서비스기준,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(http://www.smartfarmkorea.net)를 활용

[첨부 1]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(지자체)

(단위 : m², 백만원)

						단지		사업추진		과원현황		=	과수 스미	ト트팜 확	산사업		
시도명	시군명	조직명	품목명	대표자 <u>(연락처)</u>	참여 농가수	규모 (m²)	사업자 (농가)	규모 (m²)	시설/ 노지	지형 (평지/ 경사지)	기타 특징	지원 희망 시설	합계	국고	지방 비	융자	자부 담
합계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계					
												ICT시설					
												ICT연계시설 (관정, 관수관비시설,					
												자동개폐기 등)					
												계					
												ICT시설					
												ICT연계시설 (관정, 관수관비시설,					
												자동개폐기 등)					

^{*}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,000㎡까지 20백만원, 2,000㎡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(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)

[첨부 2] 사업계획 신청서

	과수분	야 스마트팜 확산사업	걸 사업계획	신청서		
	성 명		생년월일		(남/여)	
신청자 일반현황	주 소		연 락 처	전 화): 핸드폰):		
	조 직 명	조직에 포함된 경우	대표자	조직에 포함된 경	1우	
	사업예정지 주 소					
	과종/수령	(과종) (수령)	재배규모			
과수원 현황	과수원특징	시설/노지, 과수원의 경사도, 평지, 산간 등	과수원위치	마을과의 거리, 단	·	
	과수원면적	m ²	수원 거리	관정보유, 저수지		
	관수장비	제조사 000 모델명 등	저장고	저장고 보유시 면		
	작업장 유무	PC설치 가능상태, 전원공급 여부 등	기타	병해충 등 ICT 관	·	
		시설구분	. –	내용	금 액	
		○ 환경 센싱	온습도, 풍향, 풍 등의 센싱장비			
		○ 관수	관수모터, 스프링 등			
		○ 병해충 관리	IT-페르몬트랩 등			
	스마트팜	○ 저장고관리	냉동기 센서 등			
사업계획	확산사업 (백만원)	○ 과수관리시스템	PC, 원격제어, 5	로바일시스템 등		
	(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○ 모니터링	생장환경 및 도 CCTV, 웹캠, 녹			
		○ 관정				
		○ 관수관비시설 ○ 기도계계기 도				
		○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·장비				
		○ 기타	침입탐지, 서리병			
	재원조달	계	국 고	융 자 (신청액)	자부담	
	(백만원)					
정보활용동 의		Ⅰ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/				
		네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		`	경쟁력 향상	
을 위한 지	원)의 규정에 의	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	·업의 사업계획을	을 신청합니다.		
		년 월	일			
		신청자	(서명 또는 인)			
		시장.군수.구청장				
			11 91		수수료	
구비서류 :	사업계획서(조직	의 경우, 참여농가 현황 포함)			없음	

[첨부 3] 사업계획서

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

1.	신	청	지	- 현	황
----	---	---	---	-----	---

□ 일반현황

□ 사업신청자(생년월일)	:
□ 주소(연락처):	

구 분	재배면적(ha)	생 산 량(톤)	소 득 액(백만원)
'17년			
'18년			

2. 과수원 현황

'19년

사업예정지	:	<i>주소</i>	

□ 과종/수령 : *생산품목 및 수령*

□ 과수원면적 : 사업신청 면적 m²(전체 과수원면적 m²)

□ 과수원특징 : 시설/노지, 평지, 산간 유무,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

□ 과수원의 위치 : 마을과의 거리.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

□ 수원과의 거리 : *관정보유. 저수지와의 거리 등*

□ 관수장비 : 보유 시, 제조사, 모델명 등(물탱크(톤) 보유 상황 등)

□ 저장고: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, 수용량, 시설형태 등

□ 작업장: 작업장의 상태 등(전원 공급유무,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)

□ 기타 : *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*

□ 지원시설 : *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제*

3. 조직 세부현황(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)

결성일	지원시설			
대 표 자	주 소			
전화번호	Fax		재배면적	
작목반수	조합원수		생 산 량	
생산시설	(m^2)	기타		

4. 사업추진계획

가. 세부 사업계획

구 분	종 류	세부내역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 간)	비	고
	환경센싱	온습도, 풍향, 풍속, 강우,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				
	관수	관수모터, 스프링클러, 미세살수 등				
	병해충관리	IT-페르몬트랩 등				
저장고관리		냉동기 센서 등				
LOT	과수관리시스템	PC, 원격제어, 모바일 시스템 등				
ICT	모니터링	CCTV, 웹캠, 녹화장비 등				
융복합	관정					
	관수관비시설					
	자동개페기 등 ICT 연계시설·장비					
	기타	침입탐지, 서리방지 등				
		합 계				

< 세부내역별 >

종류	세부내역	단가 (천원)	개수	합계
합 계				
o 환경 센싱 -				
o 관수 -				
0 병해충관리 -				
o 저장고관리 -				
o 과수관리시스템 -				
o 모니터링 -				
o 관정 -				
o 관수관비시설 -				
o 자동개페기 -				
o 기타 -				

[※] 소요액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는 상세히 첨부

< 소요자금 현황 >

구 부	1101=1		사 '	사 업 비 (백만원)			
	사업량	계	국고(A)	지방비(B)	융자(C)	자담(D)	(A+C)
경영체명	m²						

나. 사업비 확보계획

- 예산(지방비)확보 실적·계획
- (※ 문서, 방침,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)
-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
- (※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)
-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
- {※ 보증기관의견서, 등기부등본, 감정평가서, 토지기격확인원(담보제공승낙서, 인감증명: 타인소유) 등 첨뷔

다. 생산 · 수출 · 경영 계획

- □ 연도별 출하・판매계획
 - 연도별 출하계획
- (※ 계통출하, 개별출하, 기타 등)
- 연도별, 판매처별 비중, 물량,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
- □ 수출계획·전략
 - 연도별,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
- 수출전략
- □ 경영 계획
 - 작목 재배관리, 정보화(PC, 모바일) 등의 학습계획
 -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(후계자 활용 등)

위와 같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(대표) (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도지사·광역시장 (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◆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(예시) ◆

< 필수 첨부자료 >

- 1. 개별 사업계획서
- <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>
- 2. 경영실적. 자금확보 등
 - 2-1. 담보제공능력 : 보증기관의견서, 부동산 관련서류{등기부등본, 감정평가서, 토지가격확인원. (담보제공승낙서. 인감증명 : 타인소유)}
- 2-3. 자부담확보 증빙: 예금평잔확인서
- 3. 각종 인증서, 증명서
 - 3-2.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(증권, 증서 등)
- 3-3. 수출실적 증빙자료(수출실적증명원, 수출면장 등)
- 3-4. 부지확보 증빙 : 등기부등본(법인, 대표자), 사용승낙서, 인감증명(타인소유)
- 4. 계약서, 협약, 규약 등(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)
- 4-1. 사업참여 조직·농가·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, 규약, 협약, 정관, 계약서 등
- 5.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

[첨부 4]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

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

(단위 : m², 백만원)

						단지		사업추진규	농장유형							
시도명	시군명	조직명	품목명	대표자 <u>(연락처)</u>	참여 농가수	규모 (m²)	사업자 (농가)	里 (m²)	(노지 /시설)	지원 희망 시설	합계	국고	지방 비	융자	자부 담	착공 예정일
합계																
										계						
										ICT시설						
										ICT연계시설						
										(관정, 관수관비시설,						
										계						
										ICT시설						
										ICT연계시설						
										(관정, 관수관비시설,						
										자동개페기 등)			ļ			
		l									<u>.</u>	ļ	<u> </u>			

[첨부 5]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(지자체)

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

(OO시·도)

						_			
	시설조	건(40점)	활	용조건(40	점)	가?	덕조건(20	점)	
누기	괴수원	ICT	시설	사업	부대	조직	수출	재해	합계
- 동/F	조건	시설	활용	지속성	환경	화	단지	보험	(100점)
	(25점)	(15점)	(20점)	(10점)	(10점)	(10점)	(5점)	(5점)	
	농가	농가 과 수원 조건	조건 시설	농가괴수원ICT시설조건시설활용	농가과수원ICT시설사업조건시설활용지속성	농가과수원ICT시설사업부대조건시설활용지속성환경	농가 과수원 ICT 시설 사업 부대 조직 조건 시설 활용 지속성 환경 화	농가 괴수원 ICT 시설 사업 부대 조직 수출 조건 시설 활용 지속성 환경 화 단지	농가 괴수원 ICT 시설 사업 부대 조직 수출 재해 조건 시설 활용 지속성 환경 화 단지 보험

<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>

컨설팅기관의	사전컨설팅	결과,	사업계획	신청서	및	현장실사를	통해	평가
하고 시·도 농	:정심의회에	서 공기	개심의					

* '사업대상자 선정기준'의 평가항목에 지역별·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(구 분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10점 한도내에서 기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 변경 가능

1 1 1 2 41

○ 과수원 조건 : 과수원의 특징(경사도 수원가리 등, 위치,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

○ ICT 시설 : 병해충,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

□ 활용조건

○ PC 활용 :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,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

○ 사업 지속성 : 농업후계인력 확보,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

○ 부대환경 : 작업장의 상황 정도(전원공급, 무선통신 및 PC설치·운영 가능상황 등)

□ 가점조건

○ 조직화 : 조직단위 신청 여부,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

○ 수출단지 :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

○ 재해보험: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

[첨부 6] 실적보고

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

(ㅇㅇ시·도)

(단위 : 천원)

					사업진도		()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										
시군	조직	농가	품목	사업량 (m²)	주요추진	공정	7	#	국	고	융	자	지능	타비	자	남	
				(111)	내역	(%)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	계획	집행	
			합	계		•											

주) 가. "주요추진내역"난은 착공, 공사착수, 발주,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

나. "사업비집행"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

- 4. 금후 사업추진일정
- 5. 사업추진상 문제점(부진사유) 및 대책
- 6. 기타 참고사항

[첨부 7] 정산결과 보고

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

[○○시·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 사업진도 -												사	업		비					비	고	
NGC2							계 획				집행실적(정산)				-1.1-	불용						
시군	조직	농가	품목	사업량 (m²)	계획 (A)	실적 (B)	대비 (B/A)	계	국고 (C)	융자	지방 비	자부 담	계	국고 (C)	융자	지방 비	자부 담	대비 (D/C)	차년도 이월액	또는 집행액	착공 일	준공 일
			합	계																		

[참고 서식 1] 대출신청자료

기성고 확인서

(여신관리자금 인출용)

1. 사업명: 과수생산·유통지원사업 -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(00년)

2. 사업자

○ 법인명(성명) : ○ 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(남/여) :

○ 주소(사업지역) :

3. 사업계획(행정기관 승인분)

(단위: 천원, %)

			사 업 비		
세부사업명	총투자계획	보 3	조(B)	77871(0)	TI [[(O)
	(A)	국고보조	지 방 비	국고융자(C)	자 담(C)

4. 사업실적(200 년 월 일 현재)

(단위: 천원, %)

		사업추진실적		자부담 투입실적					
세부사업명	총투자계획 (A)	사업실적 (E)	비율 (E/A)	계획 (D)	실적 (F)	비율 (F/D)			

5. 사업비 지원 : 총 사업비 : 천원(기지원 , 금회지원)

6. 입금통장 번호

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(융자금)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자: (인)

확인자: 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농협장 귀하

[참고 서식 2] 표준계약서

	과수분야 2	스마트팜 확산시	 업 공사도급 표	준계약서					
2	발 주 자 (갑)	*성명 *주소	*전화번호	-					
계 약	공사수급자(을)	*상호 또는 법인 명 ² *주소 *대표자	칭 *법인등록 *전화번호 *면허번호	_					
자	연 대 보 증 인	*상호 또는 법인 명 *주소 *대표자	칭 *법인등록 *전화번호 *면허번호	- -					
	사 업 명								
-1) _	단위사업내용								
계	계 약 금 액	금 원정	d(₩)총공사·	금액					
약	계약보증금	금 원정	j(₩)총공사·	금액의 10%					
	선 급 금	금 원정	d(₩)총공사·	금액의 10%					
내	지체상금율		1일 계약	금의 1/1,000					
용	착공년월일								
	준공년월일								
	기 타 사 항								
	하자담보책임(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)								
공종	공종별 계약금액	하자보수 보	증금율(%) 및 금액	하자담보 책임기간					
		()% 급	· 원정						
		()% 금	· 원정						

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,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.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, 연대보증인 및 시장·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()% 금

)% 금

)% 금

년 월 일

붙임서류 1.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조건 1부

- 2. 설계도서(도면, 시방서, 공사내역서, 현장설명서 등) 1부
- 3. 공사비 산출내역서(을 작성제출) 1부
- 4. 공사입찰유의서(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) 1부
- 5.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 계약특수조건(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) 1부

원정 원정

원정

 갑(농업경영체)
 인

 을(공사수급인)
 인

 을의 연대보증인
 인

 입회 및 승인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
 인